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제414회 임시회
2024. 1. 24.(수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진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2조 및 제3조)

다.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, 단장의 직무, 회의의 소집 및 운영, 안건 검토 및 의견청취, 간사,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「재해구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.

○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재해구호법 시행령」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지방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수행업무와 구성인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「재해구호법」 제8조의2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는 시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.

○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
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.
- 안 제2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의 임기와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회의 소집, 회의운영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조례안 예고(‘24. 1. 11.∽‘24. 1. 1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제정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‘24년 1월 기준 3개 시도에서(경북 · 전북 · 강원) 관련 조례가 시행 중임.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충북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지난 ‘21년 7월에 제1기 충청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현재 2기가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, 제정안은 회의 운영, 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등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되어 회의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